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3월 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3월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최인용)

□ 제안이유

○ 중동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일부를 예술 활동 종합전당으로의 기능과 새로운 문화교류 공간의 역할을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의 계획적, 안정적인 확보와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문화예술회관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편성함.

(안 제2조 및 제3조)

○ 조성된 특별회계의 재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문화예술회관 용역발주시 55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 700억원 외 재정적 투입이 더 되어야 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업비는 700~1,000억원이 예상되었음. ○ 공연장 중심의 음악홀로 전문화하고 타시와 비교 가장 규모가 있는 음악홀로 건립하고자 함. ○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려우며 향후 타당성 여부와 설계가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각 시군이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다수 만들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한데 우리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
요성 여부와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 추진하여 주
시기 바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제232호
의결 년월일	2004. 3.19 (제111회)

제출년월일 : 2004. 3. 3.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일부를 예술활동 종합전당으로의 기능과 새로운 문화교류 공간의 역할을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건립비용의 계획적, 안정적인 확보 및 민자유치 유도

□ 주요골자

- 문화예술회관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재원은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편성함.
(안 제2조 및 제3조)
- 조성된 특별회계의 재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에 사용 하도록 함.(안 제4조)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도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기타 제비용
2.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